

번호	제2022-073호
대상자	전교생
담당자	교무기획부
연락처	031-632-5723

가 정 통 신 문



지 성
(至 誠)

코로나19관련 1학기 2차 지필평가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의 교육과 학교 발전에 항상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2학년도 학생 평가에 관련한 내용을 경기도 교육청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등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거

가. [코로나][중요/변경]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중등) 제22-4판 (2022.4.28.자 변경) 안내

나. 학교교육과정과-8082(2022. 6. 2.)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2차 지필평가 운영 안내

◎ 주요 내용

가. 코로나19 확진·의심 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2차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함에 따라 분리평가실을 운영함

나.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분리 평가실에서 응시,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은 KF94마스크 착용, 타인과 접촉 최소화, 손위생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의심증상 학생

가정 또는 학교에서 자가진단 검사 결과 양성이나 의료기관의 최종 확진은 받기 전인 학생

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시험에 미응시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및 이에 따른 인정점 부여(인정비율 100%)

라. 시험응시와 인정점 부여 간 유·불리를 고려한 과목별 선택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서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제출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 없이 2일 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X)

1. 분리 평가실 응시생이 응시여부를 변경하고(응시→미응시) 의료기관 증빙 자료 미제출시 인정비율 80% 부여

2.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학생 평가

가. (등교중지) 평가 응시가 불가능하므로 **결시 처리(인정점 부여)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나 2차 지필평가 기간에 한하여 등교 및 시험 응시를 허용함에 따라 **분리평가실을 운영함.**

- (인정점 관련 증빙서류)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의 검사결과서(PCR 결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진료확인서) 확인 필수**

※ 의료기관의 증빙자료 미제출 등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에 따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인정점 부여

나.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를 학교장이 **확인 후 평가 응시 가능**

*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하며, 검사 결과 확인방법은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의료기관의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음성 결과 보호자 확인 등)

※ 확진 후 격리해제 학생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미만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불필요하므로 의사의 진단 결과 등에 따라 평가 응시 가능 여부를 결정함

다. 코로나19 관련 결시생 인정점 100% 부여

1. 등교중지학생

유형	등교중지 기간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양성) 보호자 확인서

2.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또는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

구분	접종일	접종 후 1일	접종 후 2일	접종 후 3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석'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 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증빙 자료(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 : 인정점 비율 100% 증빙 자료(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미제출 : 질병결석 인정점 비율 80%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 (인정점 비율: 80%)	

라. 결시생 인정점 산출 방식

1. 교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로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학교성적관리 기준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text{결시분의 인정점} = \text{기준 점수} \times \frac{\text{결시분의 계열 해당교과 평균}}{\text{기준점수분의 계열 해당교과 평균}} \times \text{인정비율\%}$$

당해 학년 동일 학기에 시행한 지필평가 성적이 없고 결시 이후 시행하는 지필평가 성적이 없는 경우 기준 점수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설정한다.

$$\text{해당 학생의 결시 과목의 본인 수행평가 원득점} \times \left(\frac{\text{결시 과목의 지필평가 학년 평균점수}}{\text{결시 과목의 수행평가 학년 평균점수}} \right)$$

2022년 6월 20일

마 장 중 학 교 장 [직인생략]